

독일판례 2

다른 공범자를 체포함에 있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성명을 게재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례

Hamn 고등법원 1988. 2. 10 자 판결

-3U 243/87 사건-

적용법조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1 항 제 1004 조

독일기본법 제 1 조, 제 2 조, 제 5 조

판결요지

1. 언론의 자유와 중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의 인격권과 사이의 이익의 형량은, 결국 일반적으로는 시사성 있는 기사의 보도에 더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법적인 평화를 깨뜨리고 그의 행위에 의하여 일반공중의 정보에 대한 관심을 야기한 자는, 이와 같은 관심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만족되어져야 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어떤 사람이 유죄의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지 3 년이나 경과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때에 비로소 그의 공범자가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익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개요

1965 년생의 원고와 그의 아버지는 1984 년 7 월 은행을 습격하고 인질극을 벌인 어떤 사건에 관여 하였었다. 원고의 아버지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1985 년 7 월, 10 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원고는 2 년의 소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 집행이 유예되었었다. 그런데 1987 년 1 월에 그들의

공범자로 추정되는 다른 범인이 체포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Bielefeld 에서 간행되는 「W」 신문이 원고의 성명을 그대로 표시하여 보도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 인이 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인질극을 벌인 은행습격사건에 원고가 개입 하였다는 사실 및 그 후에 그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 보도하는 것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범자로 추정되는 자의 체포에 관하여 일반공중은 고도의 정보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인격권은 위와 같은 필요성보다 후 순위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원고는 그 사건에 직접으로 관계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소의 일부에 대하여 승소의 판결을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공범자의 체포를 기화로 해서」 원고의 모든 이름을 들어가면서 원고가 위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 하였다. 쌍방의 당사자들은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그들의 1 심에서의 주장을 2 심에서도 역시 계속하였다.

판결이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 원고의 부대항소에 기하여 원고의 소는 전부 승소되어야만 한다.

독일민법 제 1004 조를 유추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V 시에서 발생한 은행습격사건에 원고가 관여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모든 이름을 기재하여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범죄행위 및 그 범인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독일기본법 제 5 조의 보호에 종속하는 것이다. 어떤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범인의 완전한 성명을 기재하여 보도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독일기본법 제 1 조 및 제 2 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에 충실한 보도에 대하여 가지는 공중의 정보에 대한관심을 그 범인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보다도 우선시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시사성 있는 보도는, 항상 우선권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법적인 평화를 깨뜨리고, 따라서 그의 행동에 의하여 일반공중의 정보에 대한 관심을 야기 시킨 자는, 이와 같은 관심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을 감수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범인은 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감수하여 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형사판결절차가 확정적으로 종결된 이후에는 그 범인의 사적인 영역에의 침해가 시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범인의 사회에로의 복귀가 위협 받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공연한 보도는,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범인에 대한 확정적인 처벌이 있는 후에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정당화시킬만한 일반 공중의 긴급한 정보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기준 하에서 판단해 보면(BverfG,NTW 1973.1227f, Lebach 사건), 원고는 1984년 V 시에서 있었던 은행습격사건에 원고가 관여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모든 이름을 들어서 까지는 보도되지 않을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범행이 있는 지 거의 3년이 지나서 그 범행의 공범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체포된 경우에는, 그 범행과 그 범행의 상황(시사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일반 공중이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보도를 함에 있어서, 언론이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미 깊고, 광범위하고, 교훈적으로 이를 묘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의 공범자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범행 및 범인에 대한 완벽한 묘사를 함에 대하여, 일반 공중이 가지는 정당한 이익은, 원고의 모든 이름을 들어 이를 언급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후퇴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언급과, 사회에의 복귀가 방해 받지 아니할 원고의 권리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다. 원고의 이름을 모두 기재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가 직업상으로는 또는 개인적으로 접촉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금방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고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게 되면 원고의 인격권을 극심하게 침해하게 되고, 그리고 원고의 직업적, 사적인 생활에 있어서 현저한 불이익을 입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고 또한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원고의 이름을 전부 기재하지 않고 보도한다고 해서 그 보도의 내용이 심하게 침해되고 따라서 그 보도가 의미 없는 것이라거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장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즉 나머지의 공범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차후의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1984년의 범행 및 그 범행의 공범자에 관하여 보도를 하는 것은 시사성이 있고 또한 정당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능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장차 위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경우에는, 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보면, 원고의 이름을 「모두」 기재한다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도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1984년

V 시에서의 은행습격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름을 모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될 피고의 의무는, 언론의 이익과 원고의 인격권과의 이익을 형량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현재의 사정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즉 원고의 사회에의 복귀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원고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더 이상 당원의 중지의 판결을 원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양쪽의 이해관계를 새롭게 형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중의 관심을 자극시키는 그 범행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게 된 경우나 또는 원고가 스스로 그의 행위에 의하여 공중의 주의를 환기시킨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원칙이 적용되게 될 것이다.